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외교관 등의 행위로 인한 범죄 피해와
일반 상해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근거 마련〉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51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구조대상 피해범죄의 범위 확대	3
2.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훈기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9. 17.
3. 회 부 일 : 2025. 9.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외교관 등의 행위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 또는 유족도 구조대상 피해범죄에 포함하는 한편,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경우에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조대상 피해범죄의 범위 확대(안 제3조제1항제1호)

우리나라가 형사재판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외교관 등의 행위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 또는 유족도 구조대상 피해범죄에 포함함.

나.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3조제1항제4호,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2항)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경우에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상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구조금의 종류에 상해구조금을 추가함.

Ⅲ. 검토의견

1. 구조대상 피해범죄의 범위 확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의 행위로 피해를 받은 피해자 또는 유족도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① ----- ----- ---.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1. -----타인(「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또는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의 피해자 보호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는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함)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기나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¹⁾

○ 또한, 제3조제1항제4호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음.²⁾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 따라서 형사재판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 행위로 피해를 당한 경우라도 현행법상의 요건에 해당하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됨.

□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정의 규정에 형사재판 관할권 면제자의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명시하는 부분은 개정 실익이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따라 외교관 등에게 부여되는 형사재판 관할권 면제는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이 내려질 뿐 범죄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임.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2.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중상해가 아닌 상해의 경우에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상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안 제3조제1항제7호)하고,

○ 구조금의 종류 등 일부 조항에 상해구조금을 추가(안 제3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제18조제1항, 제22조제2항)하였으며,

○ 상해구조금의 금액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24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안 제22조제2항)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① ----- ----- ---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	4. ----- ----- -----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③ <u>장해구조금</u>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u>장해구조금</u> 또는 중상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u>장해구조금</u>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생략)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유족구조금이나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는 <u>장해구조금</u> 또는 중상해구조금(이하 “유족구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3. (생략) ② ~ ④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u>장해구조금·상해구조금</u> 및 ----- -----<u>장해구조금·상해구조금</u> 또는----- -----<u>장해구조금·상해구조금</u> 또는----- ----- ----- ----- ----- -----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유족의 범위 및 순위) ① ----- ----- -----<u>장해구조금·상해구조금</u> 또는-----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2조(구조금액) ① (생략)	제22조(구조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 <u>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u> 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u>범위</u> 에서 피해자의 <u>장해 또는 중상해</u> 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u>장해구조금·상해구조금 및</u> ----- ----- ----- ----- <u>범위(상해구조금의 경우는 24개월 이하의 범위)</u> ----- <u>장해·상해 또는</u>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사망, 장애 또는 중상해로³⁾ 정의하고, 각각에 대해 유족구조금, 장애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을 규정하고 있음.⁴⁾

□ 개정안은 여기에 “상해”를 추가하여 상해구조금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구조금 제도는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범죄피해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지 못하게 된 일실수입을 보충적으로 보전하여 주기 위한 취지이고, 범죄피해로 신체나 생리적 기능에 경미한 손상만을

3)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애”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구조금의 종류 등) ①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애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한다.

②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③ 장애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은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애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구조피해자가 장애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라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하되,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청구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직권으로 구조금의 분할 지급을 결정한 경우

입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상해구조금을 지급하면 구조금 제도의 취지에 반할 우려 있으므로, 상해구조금 지급대상자 범위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또한, 구조금 지급 대상인 범죄피해를 기존의 ‘중상해’에서 ‘상해’로 확대하는 경우 구조금 지급대상인 범죄피해 건수가 약 43배가 증가하여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상해구조금 신설 부분은 현실적인 운영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70